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 결과



##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 가. 제안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된 법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사항임.

#### 나. 주요내용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1항)
    - 도지사와 사전 협의, 위위원회 심의, 주민의견 최대반영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개선(안 제12조 1항)
    - 공중전화부스, 통합정보지 함, 버스승강장 광고물 표시 추가지정
    - 가로등주를 삭제하고 수수료에서 전주, 가로등주 항목삭제(별표2)
  - 전광판 이용하는 공공목적 광고물 표출비율 조정(안 제19조 4항)
    - 시간당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에서 20% 하향조정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안 제32조 3. 4항)
    - 폐업 후 등록증 미 반납시 직권발소 및 관리대장 비치
  -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안 제37조제1항중 별표5)
    - 상한금액 300만원 ⇒ 500만원
  - 광고물 실명제시행(안 제39조)
    - 광고물의 설치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한

- 특정구역내 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 재정지원(안 제40조 )
  - 광고물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보상금제 운영(안 제41조)
  - 불법광고물 제거 신고자에게 예산범위내 보상금 지급
- 신고필증 교부 갈음(안 제42조)
  - 벽보. 전단 신고필증은 겸인 또는 암인, 천공으로 갈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광신)

#### [ 법적검토 ]

- 본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개정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음.
-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 2009. 4. 11 ~ 4. 30(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 2009. 5. 8.

#### [ 행정적검토 ]

-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설치를 배제하도록 하여 불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고, 광고물의 적법·불법 식별을 용이하게 하여 광고주와 광고업자에게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광고물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개정 조례로
- 안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서는 광고물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 안 제12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에서 가로등주가 제외됨에 따라 가로등주를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 안 제19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은 전광판의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퍼센트 이상에서 20퍼센트로 개정 하였으며
- 안 제32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에서는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39조(광고물 실명제)의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광고물실명제의 도입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로 판단되나
- 광고물실명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조례 공포 후 전면적인 시행이 이뤄질 경우 다소의 혼란이 우려되는 바 시민불편 최소화 및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광고물 업주에 대한 사전홍보 및 옥외광고업자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답변 요지

##### 가. 질의 요지

-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인상으로 인한 민원가능성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활동은?(김병창 위원)
- 현 조례는 신설조항이 많으므로 충분한 홍보를 위하여 시행일을 늦추는 것은 어떠한지?(유영화위원)

##### 나. 답변요지 <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 >

- 과태료 인상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불법광고물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음.

- 본 조례는 평상시와 입법예고 기간중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좀 더 철저한 홍보를 위하여 1개월정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됨.

## 5. 소수의견

“ 없음 ”

## 6. 토론요지

- 조례안의 사전 홍보강화를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 수정

## 7. 심사내용

- 산업건설위원장 수정안 발의
- 이의유무에 의한 수정안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

## 9. 심사보고 붙임서류

1.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2. 조문대비표 1부. 끝.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1342
------	------

제안연월일 : 2009. 5. 19.

제 안 자 : 김명섭 위원회 3인

### 1. 수정이유

본 일부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사전홍보 강화를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함.

### 2. 수정주요골자

부칙 안 제1조중 “공포한 날부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

부칙 안 제1조중 “공포한 날부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u>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4항, 제32조제3항 및 제4항, 제39조, 별표 5의 개정조례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09년 7월 1일부터</u> 시행한다. ----- ----- ----- -----.</p>